### 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전진경	880804-****	

#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결글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47,050	4,000	0	0
02월	47,050	4,000	0	0
03월	47,050	4,000	0	0
04월	126,110	10,170	0	0
05월	126,100	10,160	0	0
06월	126,100	10,160	0	0
07월	126,100	10,160	0	0
08월	126,100	10,160	0	0
09월	75,630	6,430	0	0
10월	75,630	6,430	0	0
11월	75,630	6,430	0	0
12월	75,630	6,43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1,074,180	88,530	0	0
총합계				1,162,71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전진경	880804-****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100,840	0
02월	100,840	0
03월	100,840	0
04월	100,840	0
05월	100,840	0
06월	100,840	0
07월	103,900	0
08월	103,900	0
09월	103,900	0
10월	103,900	0
11월	103,900	0
12월	103,9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1,228,440	0
	총합계	1,228,44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전진경	880804-****	

##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:	호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	수익자)	종피보험자2(	수익자)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		(무)롯데 치아보험GA(1204)				
보장성	104-81-30	)***	202U201200	09731	880804-****	전진경	117,240
	동양생명보험 (주)		(무)수호천사변액유	우니버셜종신			
보장성	202-81-38***		1054134	50	880804-*****	전진경	366,000
	DB생명보험 ( 주 )		VUL세번받는CI				
보장성	202-81-18	3***	1015957	49	880804-*****	전진경	968,040
	한화손해보험 (주)		무배당 한아름을	플러스 종			
보장성	116-81-46***		LA20118709127000		880804-****	전진경	289,920
	DB생명보험	(주)	변액유니암종신				
보장성	202-81-18	3***	100644936		691203-*****	박찬례	1,473,6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전진경	880804-*****

##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보험종류		
종류	사업자번호	증권번호	주피보험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인별합계금액			3,214,800

1.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교육비: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전진경	880804-****	

#### ■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

(단위:원)

자료제출기관		원리금상환액
상호	사업자번호	(콩제대상큼액)
(재)한국장학재단	**4-82-10***	1,178,779
인별합계금액		1,178,779

- 1. 공제 대상: 학자금대출(등록금 대출에 한정)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(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)
  - ※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
    -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    -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 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

-5-

-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
- 2. 공제 한도: 한도 없음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전진경	880804-****	

#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4,614,499	141,520	123,600	0	24,879,61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350,060
신용카드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7,215,834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16,086,835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141,520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123,600
신용카드	101-86-61***	( 주 ) KB국민카드	일반	961,770
인별합계금액				24,879,619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00122-2514869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##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전진경	880804-****	

#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34,990	16,400	0	0	251,390

#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일반	234,990
직불카드 등	375-88-00***	한국카카오은행(주)	전통시장	16,400
인별합계금액				251,39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전진경	880804-****		

#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,261,356	163,780	0	0	2,425,136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78	분 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
구분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82,000	113,700	75,520	63,00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86,850	1,010,620	178,380	160,800	2,261,356
		67,300	183,240	104,446	135,500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전통시장거래	139,050	2,700	0	5,630	163,780
	7,200	0	0	9,200	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: 20200122-2514869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8-